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4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심사중지 ”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어린이회관 설치와 관련, 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어린이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회관 명칭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조)

나. 어린이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추가(안 제4조)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변경(안 제6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회관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도모 (안 제8조)

마. 회관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9조)

- 바. 시설이용 방법으로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안 제15조)
- 사. 감면대상자 이용료 혜택 확대(전액감면) 및 다둥이 기준 두 자녀로 확대
(안 제17조)
- 아. 놀이실 및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이용료 및 반환기준 신설<안 별표 1, 2>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반영 예정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2024년 어린이회관 개관을 앞두고 어린이회관 명칭 및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어린이회관 운영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2

주요 개정내역 검토

가. 어린이회관 별도 명칭(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u>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둔다.</u>	제3조(명칭 및 위치) <u>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에 둔다.</u>

- 개정안은 어린이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명 공모 예정인 바, 별도 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음.(어린이회관 현황 등은 참고자료 참조)

나. 영유아 발달지원 기능 추가(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생략) ② 1.~4. (생략) <신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1.~4. (현행과 같음) 5.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

- 집행부는 발달지연 및 위험군에 속해있는 영유아가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받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회관 기능에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였음.
- 위 사업은 서울시 주관 ‘23년 약자와의 동행 지원 공모사업’신규사업 분야에 「찾아가는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바, 어린이회관 기능에 추가할 경우, 해당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어린이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자체 규정으로 전환(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8조 ② 운영위원회의 <u>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u> 1. ~ 4. (삭제) ③ ~ ⑦ (삭제)

- 현행 조례는 제8조에서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어린이회관’에 대한 집행부 직영운영방식 채택을 염두해 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어린이회관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임.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 규정(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전산원·영양사·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 ----- 하며, 관장은 <u>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u> ----- -----.

- 위 개정안은 어린이회관 관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회관이 조성될 같은 건물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수탁자: 충신대)’가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재산 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일원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동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임.
- 본 조례안과 별도로 제출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공개모집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¹⁾ 「서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

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인 바, 집행부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하겠음.

- 위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① 두 기관을 각각 별도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② 두 기관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u>100분의 50</u> 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u>세</u> 자녀 이상을 둔 <u>가족</u>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액</u> ----- -----. 1. ~ 8. (현행과 같음) 9. ----- <u>두</u> ----- <u>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u>

- 위 개정안은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금번 개정안에 반영된 어린이회관 시설 이용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발달지원센터 이용료(50,000원 이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다자녀 가족 양육부담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은 그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그 밖의 사항(안 제6조 및 별표 등)

- 그 밖의 개정 사항을 보면 어린이회관 위탁기관을 현행 3년에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5년으로 조정하고(안 제6조제3항), 어린이회관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에게 이용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며(안 제15조제1항), 별표상의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어린이회관 사업개요

- 시 설 명 : **강남어린이회관**(*가칭-강남아이문화센터)
- 위 치 : 역삼동 653-4(대지면적 553 m^2)
 - ※ 문화 집회시설 및 공동주택 중 **공공기여 부분(기부채납)**
-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2,810.25 m^2
- 추진기간 : '18. 10. ~ '24. 1.
- 개 관 일 : 준공(2024.1월) 이후
- 운영방식 : **민간위탁**(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
- 주요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본원), 발달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놀이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등



< 건축개요 >

- 지역지구 및 용도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21세대) 등
- 규 모 : 지하6층/지상11층(지하2층/지상6층 사용)
- 연면적 : 4,841.03 m^2 (문화시설 2,810.25 m^2) ▪ 건폐율/용적률 : 53.76% / 468.93%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칭 **강남어린이문화회관**) 활용 계획>

- 시설활용(안)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다목적실, 체험관, 상상도서관, 키즈카페, 소공연장
- 활용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시설 노후(삼성로72길 7, 면적 279.18 m^2 , 지상2~4층, 2006년 준공)
 - 주차장이 협소(3대)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어린이회관 조감도, 배치도, 층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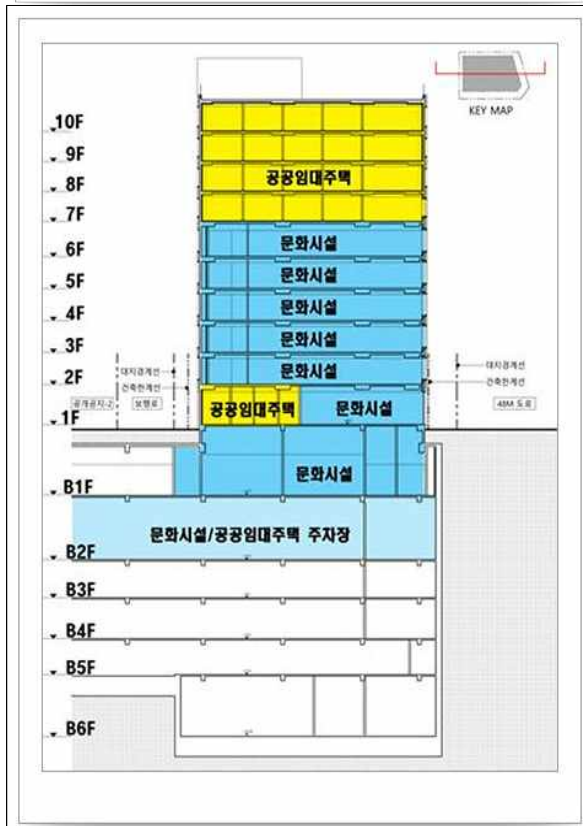
[23. 9월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지상6층)

청년주택
(지상7~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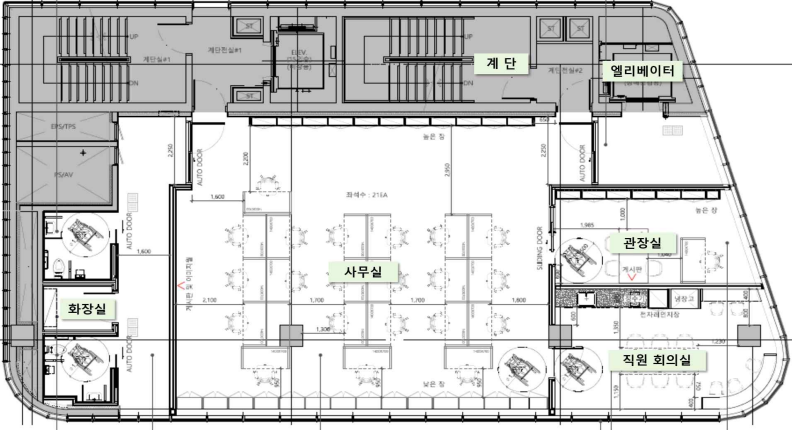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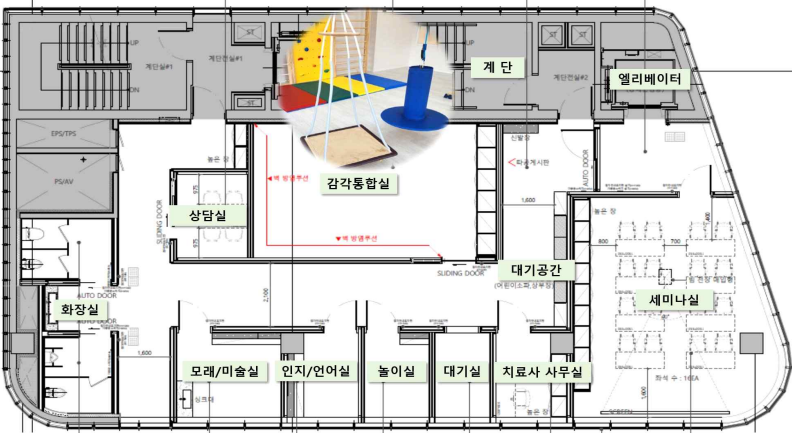
※ 현재 골조 완료
(설비 및 벽체 마감공사 중)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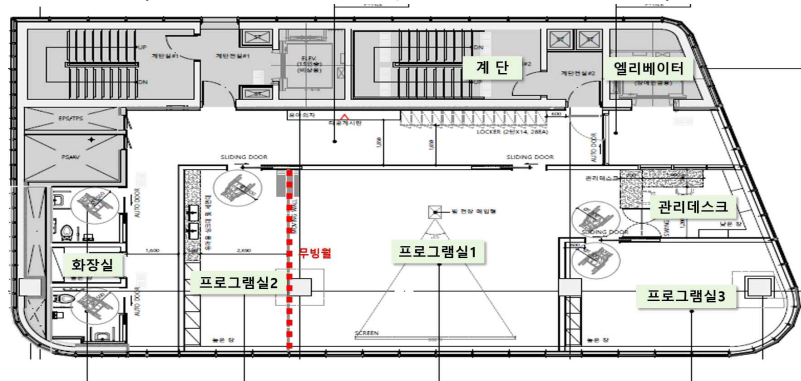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위 치		역삼동 653-4, A2BL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21세대)	
대지면적		553m ²	
건축면적		297.32m ²	
연면적		4,841.03m ² (문화시설 2,810.25m ²)	
규 모		지하6층/지상11층 (지하2층/지상6층 사용)	
층 별 구 성	지상11층		주민카페
	지상7~10층		청년주택
	지상6층	248.65m ²	다목적실
	지상5층	246.20m ²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지상4층	248.65m ²	발달지원센터
	지상3층	246.20m ²	프로그램실
	지상2층	248.65m ²	놀이실(서울형키즈카페)
	지상1층	134.91m ²	로비
	지하1층	318.03m ²	장난감도서관
준공시점		지하2층	828.03m ² 주차장(21대)
		2024. 1월	

3. 어린이회관 층별 구성(안)

구 분	평면도(면적)
6층 다목적실	면적 248.65㎡ (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5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6.95㎡) 
4층 발달지원센터	면적 248.65㎡(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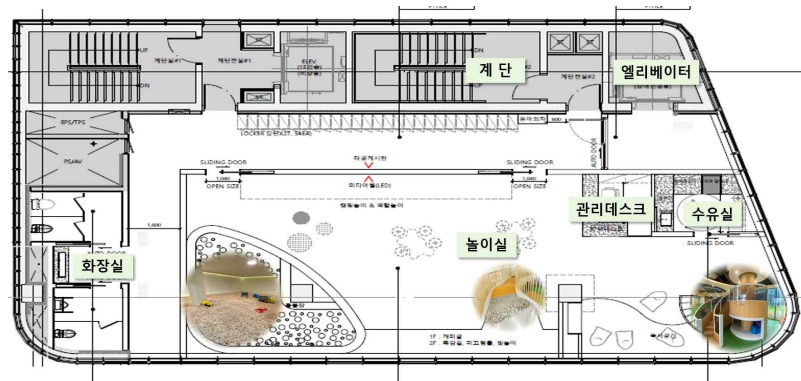
3층
프로그램실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6.95㎡)



2층
놀이실
※ 서울형키즈카페
신청·운영 예정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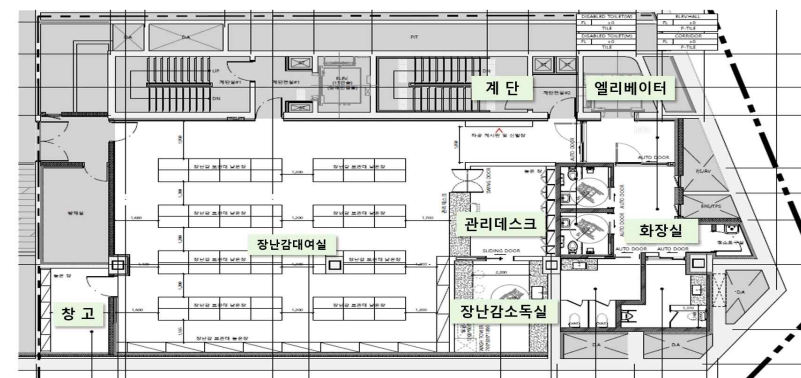
1층
로비

면적 134.91㎡(※청년주택 로비와 구분 113.42㎡)



지하1층
장난감 도서관

면적 318.03㎡(전용면적 179.16㎡, 공용면적 138.87㎡)



4. 어린이회관 운영계획(안)

☐ 인력구성

(단위:명)

총 계	관장 (*육아종합지원 센터장 겸직)	어린이회관 팀				
		팀장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행정원	발달지원센터팀
17	1	1	2	6	1	6 (상근3/비상근3)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이 입주하여 1개 시설에 2명의 장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어린이회관장을 겸직하도록 함(* 자치구 중 강동구 겸직, 송파구는 관장, 부관장)

☐ 주요사업

시 설 명	사 업 내 용
다목적실 (지상6층)	▪ 학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 어린이집 관계자 컨퍼런스, 소공연 등
발달지원센터 (지상4층)	▪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검사, 상담, 치료, 부모 교육 등 시행 - 공간구성 : 모래/미술실, 인지/언어실, 놀이실, 감각통합실, 세미나실(부모교육 등) - 인력구성 : 총6명(상담사 1명, 상근치료사 2명, 비상근치료사 3명) ▪ 치료실 이용료 : 회당 70,000원(자부담 35,000원) → 이용료 발생분은 비상근치료사 인건비 및 발달센터 교재교구비로 사용
프로그램실 (지상3층)	▪ 요리놀이, 미술놀이 등 영유아의 통합적 발달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매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 - 공간구성 : 프로그램실 3(프로그램실 1, 2사이 무빙월 설치로 가변적 사용 가능) - 인력구성 : 운영요원 2명 ▪ 프로그램실 이용료 : 5,000원 이내
놀이실 (지상2층)	▪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 운영(서울형 키즈카페 신청 예정) - 공간구성 : 놀이실, 수유실 등 - 인력구성 : 운영요원 2명 ▪ 이용료 : 3,000원 이내(돌봄 시 추가 2,000원 발생)
장난감도서관 (지하1층)	▪ 대형 장난감 대여사업 진행 ※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협소로 소형 장난감 위주 대여사업 진행 - 인력구성 : 총3명(운영요원 2명, 장난감 세척요원 1명) ▪ 이용료 : 회원가입비 연 1만원(수입금은 장난감 구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질 의 : 어린이회관이 입주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겸직하며 관리를 겸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겸직의 단점은 없나
- 답 변 : 어린이회관이 설치 예정 공간 면적이 넓지 않음. 겸직하지 않으면 관장 및 센터장을 따로 뒤편 하고 직원들도 따로 채용해야 해서 인건비 투입이 많아질 것. 겸직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도 한 군데에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함. 단점은 업무과중 우려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새로 개관 예정인 어린이회관관장을 겸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회관의 기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린이회관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이나 개방직위를 통한 운영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답 변 : 겸직 허용과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전문성 도모를 위해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동의안도 가결되었음.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우려 상황에 대해 대처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7. 토론 요지

- 어린이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위탁사무의 내용, 사용료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하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264호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 사항을 추가하고 어린이회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수정하고,
어린이회관 사용료 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어린이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수정, 조정함(안 제4호제2항제4호)
- 어린이회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의 근거를 명시함(안제5조)
- 어린이회관 위탁사무의 내용을 조정함(안 제10조제4호, 제5호)
- 어린이회관 사용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안 제16조제2항, 제3항)
- 어린이회관 시설 사용의 취소와 정지 관련 규정을 수정함(안 제20조 제1항, 제2항)
- 준용 조례를 추가함(안 제2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고,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5.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제16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징수·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를 “별표 1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를 “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의 사용허가를”을 “시설 사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를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을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프로그램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 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 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발달센터	가. 예약일 기준 3일 전	전액환급 또는 다음 회기로 연기
	나. 예약일 기준 1일 전	이용료의 30% 공제
	다. 예약일 당일	이용료의 50% 공제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 -----. 1. (생략)	제2조(정의) ----- -----. 1.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 <u>육아종합지원센터</u> ”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신설>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2.·3. (생략)	2.·3. (생략)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생 략) 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육아정보서비스 제공</u> 3. <u>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 지원</u> 4. (생 략) <u><신 설></u> 5. 그 밖에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하는 사항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u>따른다.</u> 제6조(운영 등)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하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u>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5. <u>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u> 6.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제5조(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u>구청장</u>-----.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2. (현행 제4호와 같음) 3. (개정안 제5호와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u>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u>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u>따르고,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u> 제6조(운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	--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년
이내-----
-----.

제7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
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

----- 범위-----.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한다.	
1. <u>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u>	<u><삭 제></u>	<u><삭 제></u>
2. <u>복지생활국장, 기획예산과장</u>	<u><삭 제></u>	<u><삭 제></u>
3. <u>아동, 보육, 교육,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u>	<u><삭 제></u>	<u><삭 제></u>
4. <u>그 밖에 회관운영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u>	<u><삭 제></u>	<u><삭 제></u>
③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삭 제></u>	<u><삭 제></u>
④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삭 제></u>	<u><삭 제></u>
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과장이 된다.</u>	<u><삭 제></u>	<u><삭 제></u>
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삭 제></u>	<u><삭 제></u>
1. <u>회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u>		

관한 사항

2. 회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전산원·영양사·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삭 제>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

----- 하며, 관장은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추진한다.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 ----- -----.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 -----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2. 홈페이지 구축 운영</u>	<u>2. (현행과 같음)</u>	<u><삭 제></u>
<u>3. 4. (생 략)</u>	<u>3. 4. (생 략)</u>	<u>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 음)</u>
	<u><신 설></u>	<u>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u>
	<u>5. 그 밖의 회관운영 관련사업</u>	<u>5.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u>
제15조(신청 및 <u>허가</u>) ① 회관의 시설	제15조(신청 및 <u>이용방법</u>) ① -----	제15조(신청 및 <u>이용방법</u>) ① (개정안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 등을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납입) ① -----
-----별표 1에
서 -----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입장료는 회관의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액-----.

1. ~ 8. (현행과 같음)

9. ----- 두 -----
----- 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두 -----
----- 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의 취소 등) ① -----
----- 시설 사용 -----.

1.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u>사용료를 정해진 기일</u>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 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현행과 같음)	3. <u>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u>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
--	--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제16조제1항 관련) 1. 회관 시설의 사용료 <table><tr><th>시설명</th><th>사용목적</th><th>사용료</th><th>비고</th></tr><tr><td>공연장</td><td rowspan="2">일반행사</td><td>50,000원</td><td>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td></tr><tr><td>야외시설 (운동장)</td><td>50,000원</td><td>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td></tr><tr><td></td><td>업무협약</td><td colspan="2">협약에 의함</td></tr><tr><td>무대시설 ○냉·난방 ○음향시설 ○파노라마 ○프로젝터 ○조명</td><td></td><td>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td><td>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td></tr></table>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개인</th><th>단체 (10명 이상)</th><th>비고</th></tr><tr><td>공연</td><td>10,000원</td><td>1인당</td><td>○ 1회 기준</td></tr></table>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야외시설 (운동장)	50,000원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무대시설 ○냉·난방 ○음향시설 ○파노라마 ○프로젝터 ○조명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현행과 같음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개인</th><th>단체 (10명 이상)</th><th>비고</th></tr><tr><td>공연</td><td>10,000원</td><td>1인당</td><td>○ 1회 기준</td></tr></table>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별표 1] (제16조제1항 관련) 1. 회관 시설의 사용료 <table><tr><th>시설명</th><th>사용목적</th><th>사용료</th><th>비고</th></tr><tr><td rowspan="2">공연장</td><td>일반행사</td><td>50,000원</td><td>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td></tr><tr><td>업무협약</td><td colspan="2">협약에 의함</td></tr></table>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개인</th><th>단체 (10명 이상)</th><th>비고</th></tr><tr><td>공연</td><td>10,000원</td><td>1인당</td><td>○ 1회 기준</td></tr></table>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야외시설 (운동장)		50,000원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무대시설 ○냉·난방 ○음향시설 ○파노라마 ○프로젝터 ○조명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10,000원	1인당	○ 1회 기준																																																					

프로그램	이하	5,000원 이하	
전시 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 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 야외 시설 (운동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프로그램	이하	5,000원 이하	
전시 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 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 야외 시설 (운동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프로그램	이하	5,000원 이하	
전시 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 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프로그램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프로그램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 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 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발달센터	가. <u>예약일 기준 3일 전</u>	<u>전액환급 또는 다음 회기로 연기</u>
	나. <u>예약일 기준 1일 전</u>	<u>이용료의 30% 공제</u>
	다. <u>예약일 당일</u>	<u>이용료의 50% 공제</u>

프로그램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 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 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발달센터	가. <u>예약일 기준 3일 전</u>	<u>전액환급 또는 다음 회기로 연기</u>
	나. <u>예약일 기준 1일 전</u>	<u>이용료의 30% 공제</u>
	다. <u>예약일 당일</u>	<u>이용료의 50% 공제</u>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고,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5.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제15조제1항 중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징수·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를 “별표 1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를 “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의 사용허가를”을 “시설 사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를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을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2조를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프로그램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 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 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발달 센터	가. 예약일 기준 3일 전	전액환급 또는 다음 회기로 연기
	나. 예약일 기준 1일 전	이용료의 30% 공제
	다. 예약일 당일	이용료의 50% 공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3. (생략)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생략)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육아정보서비스 제공</u>	<u><삭제></u>
3. <u>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u>	<u><삭제></u>
<u><신설></u>	4. <u>「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4.·5. (생략) 6. (생략) <u>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u>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하며, 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u>있다</u>)과 보육전문요원·전산원·영양사·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u> 2.·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u>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고,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u> 제7조(예산지원) ----- ----- ----- ----- ----- 범위----- -----.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 ----- ----- ----- ----- <u>있다.</u>----- ----- ----- -----.
--	---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생략)

2. 홈페이지 구축 운영

<신설>

3.·4. (생략)

5. 그 밖의 회관운영 관련사업

제15조(신청 및 이용방법) ①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삭제>

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제15조(신청 및 이용방법) ① ---

--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 등을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는 회관의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납입)

① -----

--- 별표 1에서 -----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
외로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신 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

9. 두 -----

제20조(사용의 취소 등) ① -----

 ----- 시설 사용을 -----
 -----.

1.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
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
려울 때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

 ----- 「서
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u>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 조례」</u>, ----- ----- -----.
---	---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6조제1항 관련)			
1. 회관 시설의 사용료				1. 회관 시설의 사용료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공연장	일반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야외시설(운동장)		50,000원	4.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5.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가 가산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업무협약
부대시설 ○냉·난방 ○음향시설 ○파노 ○프로젝터 ○조명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구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비고
공연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공연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 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 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20,000원	-	○ 1회 기준	체험활동	20,000원	-	○ 1회 기준

프로그램	이하		○ 각 프로그램 별 교재비, 재 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 요시 별도 수 납)

프로그램	이하		○ 각 프로그램 별 교재비, 재 료비는 별도
장난감 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 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 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 야외 시설 (운동장)	가. 이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 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프로 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 수료 공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 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분 (해당 시설)	반환사유	반환기준
공 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환급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연장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 수료 공제)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한 잔액 환급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1.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프로 그램	가. 공연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사용 전	전액환급 (금 융 기 관 수수료 공 제)
	나. 공연시작 후 또는 프로그램 사용 후	환급불가
	2.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강 이전	전액환급 (금융기관 수 수료 공제)
	나.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개강이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u>발달 센터</u>	<u>가. 예약일 기준 3일 전</u>	<u>전액환급 또는 다음 회기로 연기</u>
	<u>나. 예약일 기준 1일 전</u>	<u>이용료의 30% 공제</u>
	<u>다. 예약일 당일</u>	<u>이용료의 50% 공제</u>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어린이회관 설치와 관련, 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어린이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회관 명칭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조)
- 나. 어린이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변경(안 제6조)
-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회관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
율성 도모(안 제8조)
- 마. 회관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9조)

- 바. 시설이용 방법으로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15조)
- 사. 감면대상자 이용료 혜택 확대(전액감면) 및 다둥이 기준 두 자녀로 확대(안 제17조)
- 아. 놀이실 및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이용료 및 반환기준 신설
<안 별표 1,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반영 예정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5.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를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허가”를 “이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세”를 “두”로, “가족”을 “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도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의 프로그램란 다음에 발달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달센터	가. 예약일 기준 3일전	전액환급 또는 다음회기로 연기
	나. 예약일 기준 1일전	이용료의 30% 공제
	다. 예약일 당일	이용료의 50% 공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생략) 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그 밖에 <u>구청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 6.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6조(운영 등)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제6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u>구청장</u> -----. ----- ----- ----- ----- ----- -----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복지생활국장, 기획예산과장

3. 아동, 보육, 교육,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년 이내-----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회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전산원·영양사·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

----- 하며, 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청 및 이용방법) ① ---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도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액-----
-----.

1. ~ 8. (현행과 같음)

9. -----
두 ----- 가족(단, 발달
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1] (제16조제1항관련)																																																										
(생략)		(생략)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2. 회관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table><tr><th>구 분</th><th>개 인</th><th>단 체 (10명 이상)</th><th>비 고</th></tr><tr><td>공연프로 그램</td><td>10,000원 이하</td><td>1인당 5,000 원 이하</td><td>○ 1회 기준</td></tr><tr><td>전시체험 프로그램</td><td>10,000원 이하</td><td>1인당 5,000 원 이하</td><td>○ 1회 기준</td></tr><tr><td>체험활동 프로그램</td><td>20,000원 이하</td><td>-</td><td>○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td></tr><tr><td>장난감도 서관</td><td>10,000원 이하</td><td>-</td><td></td></tr><tr><td>교육 및 세미나</td><td>10,000원 이하</td><td>-</td><td>○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td></tr></table>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프로 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도 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	<table><tr><th>구 분</th><th>개 인</th><th>단 체 (10명 이상)</th><th>비 고</th></tr><tr><td>공연프로 그램</td><td>10,000원 이하</td><td>1인당 5,000 원 이하</td><td>○ 1회 기준</td></tr><tr><td>전시체험 프로그램</td><td>10,000원 이하</td><td>1인당 5,000 원 이하</td><td>○ 1회 기준</td></tr><tr><td>체험활동 프로그램</td><td>20,000원 이하</td><td>-</td><td>○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td></tr><tr><td>장난감도 서관</td><td>10,000원 이하</td><td>-</td><td></td></tr><tr><td>교육 및 세미나</td><td>10,000원 이하</td><td>-</td><td>○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td></tr><tr><td>놀이실</td><td>3,000원 이하</td><td>1,500원 이하</td><td></td></tr><tr><td>발달지원 센터</td><td>50,000원 이하</td><td></td><td>○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td></tr></table>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프로 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도 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프로 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도 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																																																									
구 분	개 인	단 체 (10명 이상)	비 고																																																									
공연프로 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전시체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1인당 5,000 원 이하	○ 1회 기준																																																									
체험활동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교재 비, 재료비는 별도																																																									
장난감도 서관	10,000원 이하	-																																																										
교육 및 세미나	10,000원 이하	-	○ 1회 기준 (재료비는 필요시 별 도 수납)																																																									
놀이실	3,000원 이하	1,500원 이하																																																										
발달지원 센터	50,000원 이하		○ 서비스 이용료 1회 기준 ○ 검사비는 별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생략)		<table><tr><td rowspan="3">발달센터</td><td>가. 예약일 기준 3일전</td><td>전액환급 또는 다음회기로 연기</td></tr><tr><td>나. 예약일 기준 1일전</td><td>이용료의 30% 공제</td></tr><tr><td>다. 예약일 당일</td><td>이용료의 50% 공제</td></tr></table>			발달센터	가. 예약일 기준 3일전	전액환급 또는 다음회기로 연기	나. 예약일 기준 1일전	이용료의 30% 공제	다. 예약일 당일	이용료의 50% 공제																																																	
발달센터	가. 예약일 기준 3일전	전액환급 또는 다음회기로 연기																																																										
	나. 예약일 기준 1일전	이용료의 30% 공제																																																										
	다. 예약일 당일	이용료의 50% 공제																																																										

--	--	--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발달지원센터, 놀이실, 프로그램실 등 이용료 등 수입은 직원 인건비, 교재
교구

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 예정

- 연도별 인건비 등 5% 상승 가정하여,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세출	위탁운영비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소계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 총 비용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 세출 : 매년 인건비 상승 등 감안하여 5% 증액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구비	지방세수입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합계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비용추계 결과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보육지원과 행정7급 이주현(02-3423-585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위탁운영비	인건비	449,870	599,752	629,740	661,227	694,288	3,034,877
	운영경비	101,430	138,516	145,442	152,714	160,350	698,452
	사업비	134,370	157,626	165,507	173,783	182,472	813,758
	시설비	297,620	267,173	280,532	294,558	309,286	1,449,169
합계		983,290	1,163,067	1,221,221	1,282,282	1,346,396	5,996,256

-1차연도 : 9개월분 편성 / 2~5차연도 : 12개월분 편성(연도별 5% 상승)

